

## 국토부차관 초청 간담회 참석 현안 건의



우리사회 조종수 회장은 1월 21일(목)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된 권도엽 국토부차관과 건설업계 대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국토부에서 권도엽차관을 비롯한 간부 4명이 그리고 협회에서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각 시도회장등 25명이 참석하였다.

국토부의 올해 건설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건설업계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조종수 회장은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설정을 건의 하였다.

이는 종합·전문간 겸업제한 폐지('07.5.17 개정)시 전문업계의 피해를 우려하여 반대급부로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을 허용하였으나 동 공사의 허용범위에 대해 전문업계가 당초 논의된 수준(5억원미만 5개공종)보다 무리한 요구(20억미만)로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조종수회장이 건산법상 영업범위 체계와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도입취지와 종합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①버스승차대 설치공사 ②길어깨 포장 공사 ③중앙분리대 공사 ④보도블럭

## 건설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임시총회(서면결의)

지난해 9월 우리협회 제4차 운영위원회와 건설회관 리모델링 발주와 관련한 소요예산(집기비품비등)을 재산조성적립금에서 일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2009 회계서면결의로 개최한 결과 대표회원 대다수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었다.

- 임시총회 개최일(부의일) : 2010. 1. 14(목)
- 의결서 접수기한 : 2010. 1. 14(목) ~ 1. 15(금)
- 서면결의 결과 : 대표회원 53명중 43명 찬성

구 분	계	찬성
의결현황	53	43
비 율(%)	100	81

### ■ 향후 추진일정

- 2월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회관 리모델링에 의한 공개경쟁방식으로 입찰공고할 예정임
- 아울러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공사사무처를 임시이전(건설회관 건너편 호텔)할 예정이다

## 대구광역시 2010년도 지역건설산업

대구광역시는 지난 1. 19 『2010년도 지역건설산업수립계획』을 수립하여 시산하 모든 기관 및 지역소재 시·군·구별 주요 공사발주계획(주택공사, 가스공사, 한정등 주요 공사발주)을 발표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공사 조기발주 확대 추진(분리발주, 도시공사발주확대, 키 및 대안공사 49% 권장) ▶지역전문 건설사 육성 지원 ▶지역인력·장비·자재 사용확대 ▶기계설비·재료·건설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등이다.

또한 대구시는 2010년 건설사업을 조기

## 2010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제 목	중 전	달라지는 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중복인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 또는 기술능력 일부 중복인정 - 자본금의 경우 <del>기</del> 보유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del>한</del> 율 한도로 후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율의 <del>에</del>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업종이 둘이상인 경우 최저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함</li> <li>〈예시〉 건축공사업자가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시 자본금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행) 건축(5억), 토공(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각각 충족 : 총 7억</li> </ul> </li> <li>↳ (개정안) 건축(5억), 토공(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억원만 추가 쏘 : 총 6억</li> </ul> </li> </ul> </li> <li>- 기술능력의 경우 <del>기</del> 보유업종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li> </ul> </li></ul>	건설업법 시행령 제 28조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과 관련없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모두를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로 규정</li> <li>○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위반 또는 형법 제 129조 내지 제 133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함</li> </ul>	건설업법 제 28조
부정당업자제처분 중 건설업 양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건설업 양도가능</li> <li>○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제처분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함</li> </ul>	건설업법 제 106조 제 3항 (10.6.30 시행) (건설업양도신규 적용)
건설업자에게 자격증 대여금지의무 부과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안되며,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려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빌려주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 있는 경우 필요적 등록말소</li> </ul> </li> </ul>	건설업법 제 88조 제 2항 (10.6.30 시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 및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가능(임의사항)</li> <li>○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 및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의무사항)</li> </ul>	건설업법 제 106조 제 3항 (10.6.30 시행)
공사대금 조정 통보의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li> <li>○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자를 포함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li> </ul>	건설업법 제 106조 제 3항 (10.6.30 시행)
부당특약요구 금지규정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 신설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특약의 유형은 시행령에 명시 예정</li> </ul> </li> </ul>	건설업법 제 106조 제 3항 (10.6.30 시행)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 : 5천만원</li> <li>○ 영업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 : 1억원</li> </ul>	건설업법 제 106조 제 3항 (10.6.30 시행)
양벌규정에 대한 법인 면책규정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형사책임 면책</li> </ul>	건설업법 제 106조 제 3항 (10.6.30 시행)
턴키설계심의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평가 심의위원 2원화 체계</li> <li>○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 턴키설계 심의분과위원회 신설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 전담(50~70명)으로 비상근 상설화</li> <li>- 심의위원 명단 사전 공개</li> <li>-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신청제도</li> </ul> </li> <li>○ 심의위원 공무원 의제 처벌 신설</li> </ul>	건설업법 제 106조 제 3항 (10.6.30 시행)
건설기술 경력증 불법 대여 알선자 처벌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 경력증 불법대여 알선자 처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li> </ul> </li> </ul>	건설업법 제 106조 제 3항 (10.6.30 시행)

###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제 목	중 전	달라지는 내용	
PQ대상 및 기준 자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및 200억원이상 고난이공사(18개 PQ실시 의무화)</li> <li>○ PQ 항목 및 배점 등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회계예규에서 규정</li> <li>○ PQ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회계예규에서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가낙찰제공사단 PQ실시 의무화(기타 공사는 발주기관이 자율결정)</li> <li>○ 각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단,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은 반드시 반영)</li> <li>* 계약이행의 성실도 : 부실범점, 시공평가결과 등을 포함토록 규정</li> <li>○ 동 규정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li> </ul>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적용 ※ '10.1.2~' 활용(계약)시 적용 가능(변동 가능)
물량내역서 수정제 및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작성, 열람·교부</li> <li>-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업체가 수정 불가</li> <li style="text-align: center;">〈신 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억원 이상(10년) → 500억원 이상(11년) → 300억원 이상(12년)</li> </ul> </li> <li>○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모든 공사에 허용(임의 적용)</li> </ul>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적용 ※ '10.1.2~' 활용(계약)시 적용 가능(변동 가능)

제 목	중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만 허용, 여타 공사는 연대보증인 및 계약보증금을 이용한 보증도 가능 * 계약보증방법 : ① 연대보증인 + 10% 계약보증금 ② 20% 계약보증금, ③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모든 공사에 연대보증인을 이용한 계약보증제도 폐지 - 최저가, 턴키·대안공사 : 공사이행 보증서만 허용 - 적격심사공사 : 20%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국가계약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공표 후 개월 경과한 날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적격심사공사는 2011. 1. 1. 이후 최초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표 예정법제처 심사 종료(내용)
단품 물가조정대상 명확화	○ 특정규격의 모든 자재에 대해 가격이 일정비율이상 증감 시 계약금액 조정 허용	○ 특정규격의 자재중 순공사원가 채로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 이상인 자재에 대해서만 단품 물가조정을 허용	국가계약 시행령 시행일 공표 후 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표 예정법제처 심사 종료(내용)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일몰기한 폐지	○ '09.12월까지만 고시금액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 ('09.1월까지는 76억원 미만, '10년 이후 50억원 미만)	○ '10.1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시금액 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	국가계약 시행령 시행일 공표일 ※ '10.1~2월경 공표 예정법제처 심사 종료(내용)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 정비	<신 설>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인정되어 계약 유지시, 계약 미이행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근거 신설)	국가계약 시행령 시행일 공표 후 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해당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표 예정법제처 심사 종료(내용)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및 제재사유 확대 등	○ 계약상대자, 입찰자에 대하여 제재 <신 설>  ○ 계약체결 이전에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사항을 회계예규에서 규정  ○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제재기간 - 동시 사망자수 10인 이상 : 1년 - 동시 사망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 : 6월 - 동시 사망자수 2인 이상 6인 미만 : 3월	○ G2B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를 제재대상에 추가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한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추가  ○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공여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시 낙찰자 결정 취소  ○ 제재기간 강화 - 동시 사망자수 10인 이상 : 1년 6월 - 동시 사망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 : 1년 - 동시 사망자수 2인 이상 6인 미만 : 6월	국가계약 시행령 시행일 공표 후 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예 한함 ※ '10.1~2월경 공표 예정법제처 심사 종료(내용)  국가계약 시행규칙 별도 제호시행일 공표 후 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표 예정법제처 심사 종료(내용)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지급, 대표자는 20일 이내 배분	○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지급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④(시행일 : '10.1.4)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	<신 설>	○ 계약이행 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계약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월 이상으로 명시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업무기준 시행일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 1인이 2개 이상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음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인은 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	회계예규 공사입찰요율서 시행일
인지세	○ 인지세 과세문서에 전자문서는 제외	○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인지세법 제3조 시행일(11.1.1)

■ 환경부 소관사항

제 목	중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순환골재등(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포함) 의무 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확대	○ 공공사업자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을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 민간 까지 확대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순환골재등(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포함) 의무 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확대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상향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상향

■ 노동부 소관사항

제 목	중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10년 최저임금 인상	○ '09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없이 전 산업 시간급 4,000 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 단속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200원	○ '10년 적용할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 구분없이 전 산업 시간급 4,110 원 적용 -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 단속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감액된 시간급 3,288원	최저임금 결정령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대상 공사 실적액	○ 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 공사 실적액은 7,064백만원.	○ 2010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 공사 실적액은 6,203백만원.	장애인고용촉진법
'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09년도 적용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3,332,820원을 적용	○ '10년도 적용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844,682원을 적용	건설업 월평균임금 결정령
'10년도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	○ '09년도 적용할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은 34/1,000임	○ '09년도 적용할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은 37/1,000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제 목	중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신 설>	○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월 이내에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관계 명확화 -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하여 손해 예방 -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이 추정되어 수급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	하도급계약추정제도에 대한 계약 체결 ※ 공포예정 년 월중 시행예정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신 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	하도급계약추정제도에 대한 계약 체결 ※ 공포예정 년 월중 시행예정

##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10.1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격	전월가격	금월가격	수급동향	비고	
철근	보통철근	D10mm	686,000	686,000	국제철스크랩가 12월 대비 25%상승감안시 7%정도의 인상소지 있으며 현재 수급은 원활함	0 단위: M/T 0 현장도착도
		D13mm	676,000	676,000		
		D16mm	671,000	671,000		
	고장력 철근	D10mm	691,000	691,000		
		D13mm	681,000	681,000		
		D16mm	676,000	676,000		
후판	SM490B	880,000	880,000	금년 철광석 가격이 30%정도 인상예상되어 2분기에 5%정도 가격인상 전망	0 단위: 개 0 현장도착도	
H형강	100X100X6X8mm	790,000	820,000	원자재가격의 꾸준한 인상으로 전월대비 3.8%인상되었음	0 단위: M/T 0 현장도착도	
	300X300X10X15mm	790,000	820,000			
	400X400X13X21mm	950,000	96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kg	3,650	3,650	가격 안정적이며 수급원활함	0 단위: 포 0 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kg	9,000	9,000			
레미콘	# 57(25-240-15)	49,700	49,700	가격 안정적이며 수급원활함	0 단위: m³ 0 현장도착도	
	#467(40-240-15)	48,700	48,700			
벽돌	㉔190X90X57mm	45	45	가격 안정적이며 수급원활함	0 단위: 개 0 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20,000	20,000			
자갈	자연 자갈	#57 25mm	13,000	13,000	가격 안정적이며 수급원활함	0 단위: m³ 0 시내도착도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mm	9,000	9,000		
		#57 25mm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1,020	1,020	가격 안정적이며 수급원활함	0 단위: 才 0 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1,180	1,180		

## 회 원 현 황

■ 회원수 : 167개사

구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87	61	15	3	1	167	△3
중 구	8	1		1		10	
동 구	11	8	2	1		22	
서 구	4	4			1	9	
남 구	9	4	1			14	
북 구	8	13	2			23	
수성구	23	21	2			46	
달서구	8	8		1		17	
달성군	16	2	8			26	

※ 등록말소 : 3

## 국토부 위탁업무 처리 현황

기 간	신규	주거적신고	기재사정
금 월 (2010.01.01~01.31)	-	1	12



### ❖ 「건설산업관계법령 사례분석」 강좌 실시

- 목적 : 건설관련법령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는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
- 교육일시 : 2010. 2.24(수)~2.25(목)비합숙
- 장 소 : CAK 건설인재교육센터(논현동 건대빌딩 3층)
- 교육훈련비(수강료)
  - 회 원 사 : 1인 240,000원, 비회원사 : 300,000원
- 연락처 : 대한건설협회 기획실 인적자원팀

### ❖ 건설공사 1차 실적신고 기한내 접수요망

- 신고기한 : 2010. 2. 16(화)까지
- 신고서류 : 정본철, 실적증명철, 부분(정본)철

## 회 장 동 정

### ❖ 매일신문사 주최 『2010 대구경북 신년 강연회』

- 일시 및 장소 : 2010. 1. 4(월) 12:00 인터콘티넨탈호텔
- 하신일 : 지역 유관기관장과 신년하례

### ❖ 국토해양부차관 초청 조찬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0. 1. 21(목) 07:30 서해안호텔
- 하신일 : 건설업계 현안 사항 건의

### ❖ 육상진흥센터 기공식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10. 1. 29(금) 15:00 대동문체육관
- 하신일 : 공사 관계자 격려